



부속문서 6

## 사업 평가회의 발표 자료

---

### ‘몽골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한-몽골 협력사업 소개’

우르트나산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이사장)

문화다양성은 인간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따라서 이는 보호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번영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약속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을 발전시키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인류 앞에 놓인 긴급한 사안 중의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39년 전, 세계와 유네스코 문화관련 인사들의 진취성과 선의 덕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때 이래로 계속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0년 현재, 185개 회원국이 협약을 맺었으며 세계유산목록 내의 900개 유산이 등록되어 추가적인 보호와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유명한 소금호수인 우브스 호(Uvs Nuur Basin)와 오르혼 계곡(Orkhon Valley Cultural Landscape)가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등재되었습니다.

2001년 31차 총회에서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선언’, 2003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2005년에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들 국제적 법적 장치들의 채택과 활용은 모든 인간의 지적 삶의 본질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몽골은 다양한 유형의 무형문화유산들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회경제적 복잡함으로 인해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은 악화되고, 사라지며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취약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대공황의 부정적 결과들을 포함하는 몇몇 주요 요인들이 몽골 사회가 그들의 국가정체성, 문화유산과 전통을 도외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현대사회로 바뀌는 전환기에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초래된 부정적 현상들과 혼란이 있었고 세계화, 도시화

와 최신 대중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유 때문에,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은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소멸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능력을 갖추고 강화시키기 위해, 몽골정부와 민간사업자들은 근년부터 국제기구들과 함께 많은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훌륭한게도,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그 보호에 관한 일반적 의식과 자각이 비교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몽골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2008 년경까지는 전통문화, 공연예술과 민속 개념만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직 몽골에서 무형문화유산 및 그와 관련된 측면, 쟁점에 관한 최신 정보들의 보급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선 2003 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무형유산 보호협약의 실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번역과 보급을 제외하면, 몽골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관련 측면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국제적으로 인정된 체계적인 참조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의 기본 개념, 보호조치와 접근법, 협약의 목적과 원칙,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조치들과 프로그램들의 원칙, 공동체의 참여가 갖는 중요성 등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중요 사안들에 대한 오해와 오역의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대중과, 보호시스템과 그 방법을 갖추기 위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과 활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 또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최근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현장 활동에서 여러 사업자들, 특히 관련된 공동체, 전통 보유자들, 연구자들, 관련 공무원과 정책입안자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의 기본적인 개념과 연관된 측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유네스코 몽골국가위원회는 한국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을 받아 ‘몽골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 실행’이라는 이름의 한국-몽골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8 년에 시작되었으며,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전반적인 보호 및 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프로젝트의 체계 내에서, 다음의 주요 활동들이 실행되었습니다.

- 서부, 중부, 동부 및 고비사막 지역에서 선택된 아이막(지방)들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현장조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와 실연자들을 정의하고, 그들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 지혜, 지식, 방식, 기량, 과학적이며 예술적인 중요성에 대한 기타 지적 교육을 기록화하고 현장에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장조사 결과는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종합적인 보호를 위한 후속활동의 직접조사자료로 사용될 만큼 높은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8, 2009)
-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등록에 대한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자격종목’를 포함한 중요 자료들의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몽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서류들은 교육문화과학부의 장관령 제 414 호로 승인되었습니다. (2009)
- 공인을 위한 국내 무형문화유산 임시리스트를 완성하였으며, 이는 2009 년 교육문화과학부의 장관령 293 호로 승인되었고 2010 년 장관령 제 92 호로 개정되었습니다. (2009)
-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참고도서의 텍스트 준비 (2009)
-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참고도서의 몽골어 및 영어 판본 인쇄 (2010)

우리는 이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매우 중요한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 훌륭한 입법환경의 구축
-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정부의 관심을 고취시켰으며 일부 재정지원을 제공받기 시작함
-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증가
- 정부, 비정부기구들, 여러 사업자들 간의 협력 및 공동작업 강화
-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국가목록작성 수립
-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참고도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The ICH of Mongols)’ 발행

몽골어와 영어 판본의 이 참고도서는 앞으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 전문가들과 현장전문가에게 참고자료로서 쓰이게 될 것이며, 또한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책 속의 무형문화유산, 전통문화와 민속에 관한 청년들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목표를 둔 의식 고취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함의된 협력활동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할 것입니다.

-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을 발굴하는 표준 및 영속적 국가기록정보시스템 진척
- 음성 및 영상녹화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의 기록화, 보급을 위한 중요자료 DVD, CD 제작
- 노후하거나 위험에 처한 몽골 관련 무형문화유산의 저장과 디지털화
- 몽골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웹사이트 개발
- 가족 혹은 인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특정 국가적 무형문화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여러 유형의 ‘전수자’ 교육 또는 견습 프로그램 개발

##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

자르갈사이칸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정책국 부국장)

1990년대부터 몽골이 세계를 향해 점차 열린 나라가 되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사실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관념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전통문화유산의 회복과 보호에 우호적인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몽골 정부도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활동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대중들로부터 나온 의지, 의도 및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몽골 국회에서의 문화유산보호법 채택, 몽골 대통령에 의한 모린 쿠르, 우르틴 듀, 흐미 전통유산의 명예 부여와 전승에 관한 법령 발효, '전통문화 발전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의 채택, 모린 쿠르, 우르틴 듀, 흐미와 비 비엘지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과 이들의 시행이 주요 성과입니다.

1997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하기 위한 기회가 저희들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몽골 전문가들이 유네스코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Central Asian Epic' 국제심포지움이 1998년 몽골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이 때, 저희의 문화계 인사들과 예술가들이 국립무형문화유산센터를 창립하고, 새롭게 창립된 센터를 기반으로 모린 쿠르 연주자들, 우르틴 듀 창자들, 장가 시인들, 비 비엘지 무용수들과 흐미 창자들의 등록과 음성 및 시청각 및 기타 유형의 기록화를 위한 진심으로 고결한 활동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밖에,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기타 비정부기구들은 정기 전통문화 축제를 조직하고 전통공연예술과 공예에 대한 대회들과 전시들을 구성하였으며, 전통 문화, 예술, 실습과 몽골 전역의 지방 및 도시들의 축제이벤트들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 조치들을 채택하였는데 이 또한 진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목적을 둔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추진 과정에서 우호적인 합법적 배경을 형성하며,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기반을 설정하고, 몽골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을 확인 및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프로그램

으로 인간문화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시스템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권고안,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잠정적인 목록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제각기 작성되었습니다. 2008 년에 아주 정교하게 작성된 정부 허가는,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를 인정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 국가 대표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긴급보호목록에 더하여 프로젝트의 정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무형문화유산과 그 소유자들의 확인, 등록, 보호, 전승, 발전과 진흥에 관한 국가 지원 규정’, ‘무형문화유산과 그 소유자들의 확인에 관한 국가 위원회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시스템의 기틀을 잡는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몽골-한국의 공동 프로젝트는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매우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해냈습니다. 우리의 한국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친밀한 협력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몽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센드수렌 (몽골특별감사원 문화재분야 선임감사)

### 몽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센드수렌 (몽골특별감사원 문화재분야 선임감사)

2010-12-09

#### 법률제정

- × 몽골헌법
- × 국가발전계획에 기초한 새천년의 도전
- × 문화에 관한 국가정책의 현재
- × 문화 관련법
- × 국가공용어 관련법
- × 저작권 관련법
- × 몽골 국가안전보장 이념
- × 문화유산 보호 관리법

국제적으로 문화적 가치의 발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100개 이상의 법률문서가 시행되고 있음

-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185개국 가입, 몽골은 1990년 가입)
- ✦ 유네스코 전통문화와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
- ✦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
- ✦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 ✦ 2005년 문화다양성협약

## 법률제정

- ✦ 1997
- ✦ 이 법은 2001년 개정되었으며 처음으로 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사안들이 포함된 것이다. 그 결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이 채택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 ✦ 1954년 헤이그 협약의 주요 원칙들과 1970년, 1972년 유네스코 협약을 반영하여, 이 법은 유네스코 협약 제2조 4항과 5항의 형태로 발굴, 분류, 등록, 활용, 소유, 구입, 연구, 홍보, 분배, 불법거래 금지 및 범법자들에 대한 책임부담에 관련된 모든 관계들을 정리한 복합적인 기본 문서이다.



##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

- × 1999년 몽골 정부결의안
- × 1998-2004년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 × 2005.03.09 몽골 정부결의안 제43호
- × 2005-2014년 모린 쿠르와 우르틴 듀 국가프로그램
- × 2009.01.14 몽골 정부결의안 제10호
- × 몽골 전통 비 비엘기 국가프로그램
- × 2007.06.26 몽골 정부결의안 제159호
- × 몽골 흐미 국가프로그램

## 더 시행되어야 할 조치들

- ×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기존 요구에 기반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 1.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법을 채택한다.
- × 2. 정부로부터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수립하고, 무형문화유산 연구와 진흥, 보호에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장려하는 정책을 촉진, 제공한다.
- × 3. 무형문화유산 요소들의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수립하고,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국가목록을 유지하면서 중요무형유산 보유자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 × 무형문화유산 등록과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현재의 장비 및 설비들을 보수하며, 특별 연구실을 설립하고, 해외 인적 자원을 준비하며, 현장 전문가들을 제공한다.

## ‘몽골 무형유산 종목 등재 및 보유자 인정 : 무형유산 목록 작성을 중심으로’

윤덴바트 (몽골 문화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과장)

한국 문화재청과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몽골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호적 입법환경 형성,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지원사업 수립,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주요 조치들이 채택되었습니다.

몽골은 2005 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비준 이래, 몽골은 자국 영토 내에 남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몽골 전통 장가(중국을 포함한 다민족들로 구성됨), 몽골 전통축제 나담, 몽골 전통예술 호미와 매사냥(아시아와 유럽 12 개 국가로 구성됨)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몽골의 서사시, 몽골 쉰리 전통음악, 몽골 전통춤 비 비엘기는 유네스코의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몽골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보호하고 그 보유자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몽골 정부와 교육문화과학부는 국가 대표 무형문화유산 목록,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숙련된 솜씨와 기술을 가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국가 목록을 승인하였으며, 매년 위의 목록들을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목록을 더 발전시키고, 보호조치를 지정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공동체, 모임들과 관련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지정 지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몽골 대표목록과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들의 목록화 사업은 위의 목표들을 실행함으로써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갱신하고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를 지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확립하며,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국가등록 정보시스템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 시스템의 성공적인 수립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실행은 이러한 영역에서 심화된 일련의 연구와 보호활동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존하는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우선 등록 작업을 조직화하여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등록 작업은 이후 행해질 심화 활동들의 중요 자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몽골 무형문화유산의 국가목록 작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몇 가지 성과를 말하고자 합니다.

몽골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을 보호하고 그 보유자들(의 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70 개 종목들이 국가 대표 무형문화유산 목록, 18 개 종목들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100 명의 보유자들이 숙련된 솜씨와 기술을 가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의 국가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본 사업수행 전에, 별도의 시스템이나 규정 없이 부분적으로 열악하게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는 앞으로 매년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목록화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전에 있었던 무형문화유산 목록화 활동은 연구진이 있었던 곳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는 몽골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최초 등록 작업’을 수행하여, 목록화의 범위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슴(지방의 하위 행정단위), 호루(구역의 하위 행정단위), 중간단위의 지방과 구역에서 무형문화유산 등록에 적합한 인물들과 정보방법론 학자, 공무원들을 지정하고 그들의 맡은 바를 알리며, 필요한 작업규정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들에 대한 국가등록과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중에, 우리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9 개 구역과 21 개 지방의 329 개 슴 중 283 개를 포함한 몽골 행정구역의 85%에서 처음으로 ‘주요 무형문화유산과 그 보유자 등록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전체 88 개 무형문화유산과 3,339 명의 사람들이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로 지정 등록되었습니다.

이 중 57 명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과 그들의 기술, 연주들은 음성녹음과 영상 녹화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공연예술 50 개, 전통사회활동과 의식 2 개, 전통공예 5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국가목록과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지정을 위해 대중, 관련 문화유산 공동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위의 리스트를 발전시키고 매년 보완하기 위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준비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지방과 숨에서는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보호하며 후속세대에게 전승해야 할 의무를 갖는 그들의 고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과 대중의 참여 증가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 및 보호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연구, 지정 및 기록화에 대한 지식과 방법론은 문화관련 행정가들, 연구자들, 정보 및 등록 담당자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기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해 왔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은 미래의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와 보호를 진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최초의 기본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보다 발전되고 일관성 있는 보호조치를 갖추려는 목표를 갖고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며, 이 분야 한국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지원사업의 의의와 향후 협력과제’

박원모 (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조사팀장)

### 1. 들어가는 말

- 세계화 도시화 과정에서 변형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2003 년에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풍부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태 지역은 무형유산의 보고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이 부족
- 일찍부터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무형유산 보호 분야의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설립

### 2. 센터의 목적과 기능

#### 가. 목 적

- 센터의 임무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무형유산보호협약에 의거하여 아태지역의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것
- 센터의 목적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태 지역의 지역 역량을 증진
  - 아태 지역 국가들의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증진
  - 관련 공동체 참여 확대와 일반 대중에 대한 인식 제고
  - 아태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 증진

#### 나. 기 능

-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체계 구축
  - 아태지역 무형유산의 목록작성 및 기록 작업 지원
  -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브 구축 작업
  - 노후 혹은 손상 자료 복원, 보존 및 디지털 작업
  - 메타데이터를 개발하여 아카이브 간의 연계 촉진
- 축적된 무형유산 관련 정보와 자료의 활용 및 보급

- 무형유산에 관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인식 제고를 위한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 홍보물 발간
- 무형유산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 증진
-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그룹, 개인 간 네트워크 구축
  - 공연·전시 등 지역 및 국제 수준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개최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모범 활동 사례 발굴 및 백서 발간
  -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및 그룹 단위의 네트워크 회의 개최
-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 및 지식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지역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
  - 무형유산 분야의 센터 및 기관 간 국제 연계망 구축
  -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전문가 풀 운영
  - 무형유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원활히 획득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포털 웹사이트 운영

### 3. 몽골 무형유산 제도 보급 사업 평가

#### 가.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07-2010 년(4 개년)
- 주관 기관 : 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몽골위원회('07-'09), 몽골역사문화유산보호재단('10)
- 후원 기관 : 문화재청(한국), 문화예술위원회(몽골) 등

#### 나. 주요 내용

- 2007 년 : 양국 전문가 교류
  - 한-몽골 무형문화재 제도 활용을 위한 1, 2 차 전략회의(8 월, 11 월)
- 2008 년 : 무형유산 제도 구축 및 법률 작업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법률 초안 작성
  - 2008 년 몽골 무형문화유산 제도 전문가회의(12 월)
  - 몽골 무형유산 보유자 발굴 현지 조사(몽골서부지역)
- 2009 년 : 현지 조사 및 보유자 선정
  - 중부 및 고비 지역 무형유산과 보유자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
  - 무형유산 및 보유자 발굴 작업과 보유자 관련 임시 목록 작성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및 선정 보유자 훈련 워크숍 개최
- 몽골 무형유산을 소개하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준비 등
- 2010 년 : 몽골 무형유산 가이드북 발간
  - 몽골 무형문화유산 가이드북 제작(몽골어, 영어)
  - 사업 최종 평가세미나 및 출판기념 행사 개최
  - 인식 제고를 위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진전 개최

#### 다. 사업 성과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률 제정(교육문화과학부 장관 훈령 293, 2009 년 7 월 8 일 승인)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구축
- 몽골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
  - 대표목록 5 개 분야 71 개 종목 작성
  - 긴급보호목록 8 종목 작성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58 명 명단 작성
- 몽골 무형문화유산 종목 소개 책자(몽골어, 영어) 제작

#### 4. 향후 과제

- 지난 4 년 동안 몽골은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목록 및 보유자 선정 작업을 실시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체제를 마련되었다고 평가됨
- 한편,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내년부터 정식으로 유네스코의 지역센터로서 특히, 정보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됨
- 따라서 한-몽골 협력 사업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보다 발전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방향의 과제를 제시함
  - 무형유산의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무형유산 보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무형유산 종목 기록작업, 무형유산 관련 훼손 자료의 디지털화, 무형유산 관련 웹사이트 구축)
  - 전문가, 전승자, 전문기관, NGO 등 무형유산 관련 기관 및 개인 간의 온/오프 상의 네트워크 구축(전문가 및 NGO 회의 개최, 전승자 간의 교류 행사 추진, 온라인상의 무형유산 대화방 운영 등)